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8. 23 선고 2015가합580591 판결 [주식매매대금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일신녹색신성장동력펀드

피 고 티플렉스 주식회사

변론 종결 2016. 7. 14.

판결 선고 2016. 8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,239,763,334원및 이에 대하여 2014. 4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1. 11. 1. 피고와 사이에, 피고가 보유한 엠비즈글로벌 솔루션즈 피엘씨(M-Biz Global Solutions PLC, 영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하 '이 사건 영국주식회사'라 한다) 발행의 보통주 77,250주를 풋옵션 조건으로 1,854,000,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주식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풋옵션(이하 '이 사건 풋옵션'이라 한다) 약정은 다음과 같다.

1 원고는 2013. 12. 31.까지 이 사건 영국 주식회사가 코스닥, 국내 유가증권 거래소 또는 해외 유가증권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는 경우, 2014. 3. 31.까지 이 사건 매매대상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(풋옵션)를 가진다.

2 풋옵션 행사의 경우, 원고는 풋옵션에 따른 매매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 전에 피고에게 주식매수청구의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. 원고의 서면통지일로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지정하는 날(이하 '매매예정일'이라 한다. 원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통지 후 15일째 되는 날을 매매예정일로 간주한다)에 서면통지서상의 주식수량에 대하여 아래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주식의 매매가액으로 하여 해당 주식에 대하여 매도인인 피고와 매수인인 원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.

3 원고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시 매매가액은 1,854,000,000원(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주식 매매대금) 및 이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매매예정일까지 연복리 8%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

4 원고의 매수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매매예정일에 피고가 위 3항에 따른 매매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, 피고는 매매예정일로부터 매매가액이 실제 납입되는 날까지 위 3항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20%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다.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2011. 11. 4. 피고에게 1,854,000,000원을 지급하고, 이 사건 영국 주식회사 발행의 주식 77,250주를 매수하였다.

라. 그 후 이 사건 영국 주식회사는 2012. 5. 31. 유한회사인 엠비즈글로벌 솔루션즈리미티드(M-Biz Global Solutions Ltd, 이하 '이 사건 영국 유한회사'라 한다)로 전환되었고, 2012. 11. 5. 설립된

엠비즈글로벌 에이지(M-Biz Global AG, 이하 '이 사건 스위스 주식회사'라 한다)가 이 사건 영국 유한회사의 지분을 현물출자의 형태를 통하여 포괄적으로 인수함에 따라, 원고는 이 사건 스위스 주식회사의 주식 중 총 78,004주(별지 기재 주식으로 이하 '이 사건 주식'이라 한다)을 보유하게 되었다.

마. 그런데 이 사건 영국 주식회사와 이 사건 스위스 주식회사는 2013. 12. 31.까지코스닥 등 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하였고, 이에 원고는 2014. 3. 27. 피고에게 이 사건주식의 매매예정일을 2014. 4. 15.(이하 '이 사건 매매예정일'이라 한다)로 정하여 풋옵션 행사를 통지하면서, 2014. 4. 15.까지 매매대금으로 2,239,763,334원(원고가 이 사건주식을 매수한 대금 1,854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금 지급일인 2011. 11. 4.부터 이 사건 매매예정일인 2014. 4. 15.까지 연 8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액, 이하 '이 사건 매수대금'이라 한다)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4 내지 6, 19 내지 30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2014. 3. 27. 풋옵션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(환매)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,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 2,239,763,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4. 16.부터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0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[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이전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매수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. 그리고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데(대법원 2001. 12.11. 선고 2001다36511 판결 등 참조), 갑 제7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매매예정일을 2014. 4. 15.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고, 피고는 원고에게 '열악한 회사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'고 통보한 사실, 이후 원고는 계속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, 피고가 매수대금을 감액하여 제3자에게

인수하도록 해달라는 등 이에 응하지아니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따라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, 원고가 매매예정일을 정하여 피고에게 매수대금의 지급을 최고함으로써 피고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것을 대비하는 한편,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,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매수대금의 지급을 미뤄온 사정을 더하여 보면,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정일 무렵 이 사건 주식의 이전과 관련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봄이 신의칙상 상당하다.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수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예정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따라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를 진다]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수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, 다만 원고의 청구금액에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배당금등이 공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주식에 관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을 이 사건 매수대금에 공제할 근거가 없으므로[오히려민법 제587조에 의하면,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이전하기 전까지 위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(배당금)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]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은희, 판사 이봉락, 판사 김유정

별지

주식의 표시

발행회사 : 엠비즈글로벌 에이지(M-Biz Global AG)

종류 : 기명식 보통주식

액면가 : 금 0.1 스위스 프랑(CHF)

수량 : 78,004주. 끝.